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정과제 ‘49-1.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’의 주요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,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이 필요함

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공립유치원 분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분원장의 설립·운영을 위한 시설·설비, 교직원 배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공립유치원 분원장 설치 근거 마련(안 제9조의3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9조의3(분원장) ①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유치원에 분원장을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치원의 설립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② 분원장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이 영 제23조 내지 제25조에 따른다.
- ③ 분원장의 설치·운영·폐지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설></u>	<u>제9조의3(분원장) ①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유치원에 분원장을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치원의 설립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.</u> <u>② 분원장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이 영 제23조 내지 제25조에 따른다</u> <u>③ 분원장의 설치 · 운영 · 폐지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유아교육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694